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가단1223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22. 2. 1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010,676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010,6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내지 제5항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2. 1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판사 장현자

부동산 목록

1. 전라남도 구례군 대 621㎡
2. 전라남도 구례군
-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구례군
-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0.2㎡
- 부속건물
- 시멘트블록조 함석지붕 단층 창고 23.8㎡
- 시멘트블록조 함석지붕 단층창고 36.9㎡
3. 전라남도 구례군 답 276㎡
4. 전라남도 구례군 전 6㎡
5. 전라남도 구례군 전 10㎡ 끝.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 []

[]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위 C []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이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C []의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소외 D [] 주식회사는 2016. 3. 3. 위 C []에게 금 1,0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21. 3. 3.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9%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대부거래계약서 참조).

그런데 C []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D []는 2017. 4. 12. 소외 E [] 주식회사에게 C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E []는 2018. 10. 26. 원고에게 C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3, 4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원고는 이후 위 C []를 상대로 위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

고(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09275), 지급명령이 2020. 5. 14. C에게 송달되었으며, C가 이의하지 않아 같은 달 29.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지급명령 참조).

따라서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C는 원고에게 금 22,478,153원 및 그 중 금 9,465,203원에 대하여 2022.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제안서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C의 아버지는 소외 F이었는데, 위 F은 2022. 1. 27. 사망하였고, 위 C는 위 F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 (위 F의 상속인들 및 C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22. 3. 2.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C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C의 재산인데, C는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 바,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C 및 피고 사이의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C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취지를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전인 1979. 11. 15. '채권 최고액 금 440만 원', '근저당권자 G' 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사해행위 이후인 '2022. 3. 11. 말소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참조).

따라서 본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청구가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전술하였던 2022. 4. 6.까지의 원리금인 금 22,478,153원을 한도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2022. 10. 11.자)

1. 기 제출한 소장의 기재내용을 원용합니다.

2. 상속지분 등의 특정

가. 피상속인 F은 2022. 1. 27. 사망하였는데, 당시 위 F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B(피고, 수익자)과 자녀들인 C(재무자), H, I, J, K가 있었습니다(갑 제6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7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8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참조).

따라서 재무자 C와 피고는 모자관계이고, 위 C의 상속지분은 '2/13'입니다.

나. 위 F은 2022. 1. 27.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때는 '2022. 2. 11.'입니다(갑 제8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따라서 위 2022. 2. 11.자 상속재산분할협회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입니다.

다. 당시 '상속재산' 으로는 별지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동산(소장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과 동일합니다) 외에도 별지목록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바(갑 제8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갑

제5호중의 3, 4, 5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참조),

원고는 새로 발견된 별지목록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 또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으로 추가합니다(그에 따른 별지 부동산 목록을 새로 제출합니다).

즉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위 상속재산 중 2/13 지분은 채무자 C가 상속받았어야 함에도, 위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은 피고만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3. 채무자 C의 무자력 관련하여

가. 법원행정처의 2022. 7. 14.자 회신에 의하면, 채무자 C는 2020. 6. 1. 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2022. 2. 11.) 및 현재까지 소유하였던 부동산이 없었습니다(적극재산의 부재).

나. L의 2022. 7. 8.자 신용정보조회회답서에 의하면, 위 C는 위 사해행위 당시(2022. 2. 11.)

L에 등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 원금				
순번	채무의 발생일 또는 연체발생일	사유 발생 당시 채무의 원금액	채권자	참조
1	2015. 11. 25.	7,896,000원	M은행	신용정보 조회 결과
2	2015. 02. 13.	6,857,000원	N	신용정보 조회 결과
3	2017. 04. 27.	4,489,000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 조회 결과

4	2017. 06. 05.	3,548,000원	O	신용정보 조회 결과
5	2017. 06. 02.	7,896,000원	M 은행	신용정보 조회 결과
6	2016. 06. 14.	6,857,000원	N	신용정보 조회 결과
7	2017. 06. 16.	14,383,000원	광주신용보증재단	신용정보 조회 결과
이 사건 손해행위 당시 원고의 채권액 원금				
합계		51,926,000원		

[위 회답서 중 ‘신용정보 조회 결과’ 참조, 회답서에 기재된 금액은 이 사건 손해행위 이전에 채무 또는 연체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미변제된 채무의 원금이므로 연세이자 등을 포함한 실제 채무액은 훨씬 다액입니다.]

등 합계 51,926,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 외에도

원고에게 금 9,465,203원(이 사건 양수금입 ; 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중 ‘원금잔액’ 참조),

등 합계 61,391,20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위 채무액은 이자는 제외한 ‘원금’만에 대한 것인 바, 이자를 감안한 실제 채무액은 위 금액을 상회할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이 위 C는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는 바, 그로 인해 위 C는 무자력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

었다고 할 것입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책임재산의 범위 관련

가. 가액반환 대상 및 원물반환 대상 부동산의 존재

‘별지목록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은 원물반환청구의 대상입니다(갑 제5호증의 3 내지 5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별지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조합)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위속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이 ‘가액반환’ 청구의 대상입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별지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액반환청구

위 부동산의 시가는 101,189,400원(= 62,969,400원 + 38,220,000원)입니다(갑 제9호증 개별공시지가, 갑 제10호증 개별주택가격 참조)이고,

○ 전라남도 구례군 대 621㎡ : 62,969,400원

= 2022년 개별공시지가 78,000원 × 621㎡ × 130%

○ 전라남도 구례군 주택 : 38,220,000원

= 2022년 개별주택가격 29,400,000원 × 130%

별지목록 제1항, 제2항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자가 조합

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440만원입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따라서 위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부동산 가액 96,789,400원(101,189,400원 - 4,400,000원) 중 위 C의 상속지분 가액은 14,890,676원입니다 (96,789,400원 × 상속지분 2/13; 소수점 이하 절사).

따라서 위 96,789,400원이 별지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위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책임재산이고,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2,478,153원과 위 책임재산 14,890,676원 중 원고는 더 적은 금액인 14,890,676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다. ‘별지목록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대한 원물 반환청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2,478,153원에서 위 가액반환금액 14,890,676원을 공제한 나머지 피보전채권액 7,587,477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별지목록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2022. 12. 27.자)

1.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근거에 대하여

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자료가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의 150%(2022. 12. 31. 이전 신채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첨부서류 6.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가격 산정기준 참조).

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는 시가 감정 등에 의할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지가보다 2배 이상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의 130%로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책임재산을 계산할 경우 시가 감정을 통하여 그 이상의 가액이 산정되는 것보다 책임재산의 가액이 줄어들 수 있어 피고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시가 감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후 피고가 폐소할 경우 감정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 공시지가의 130%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한 시가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시가 감정을 통하여 산정하는 경우보다 가액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피고에게 여러면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원고 회사는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30%로 산정하여 시가를 계산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원상회복의 방법

가. 별지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액반환청구

위 부동산의 시가는 62,969,400원(갑 제9호증 개별공시지가 참조)이고,
[엄밀히 아래 개별주택가격은 그 대지인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 개념이므로, 원고는 더 큰 금액인 토지의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전라남도 구례군 P 대 621㎡ : 62,969,400원
= 2022년 개별공시지가 78,000원 × 621㎡ × 130%

○ 전라남도 구례군 P 주택 : 38,220,000원
= 2022년 개별주택가격 29,400,000원 × 130%

별지목록 제1항, 제2항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자가 G 조합
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440만원입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따라서 위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부동산 가액 58,569,400원(62,969,400원 - 4,400,000원) 중 위 C의 상속지분 가액은 9,010,676원입니다
(58,569,400원 × 상속지분 2/13; 소수점 이하 절사).

따라서 위 9,010,676원이 별지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위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적임재산이고,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2,478,153원과 위 책임재산 9,010,676원 중 원고는 더 적은 금액인 9,010,676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손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별지목록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 에 대한 원물 반환청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2,478,153원에서 위 가액반환금액 9,010,676원을 공제한 나머지 피보전채권액 13,467,477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 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별지목록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 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손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